

갤럭시아머니트리(주) 및 2개 증권회사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갤럭시아머니트리(주) 및 2개 증권회사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다 음 —

1. 상 호 : 갤럭시아머니트리(주)
(공동신청인 : 신한투자증권(주), 유진투자증권(주))
2.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범위
 - (금융서비스 종류) 자본시장
 - (주요 내용) 항공기 엔진 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당 수익증권과 1:1 방식으로 미러링 되는 토큰을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
3.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대상
 - 일반투자자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선정한 항공기 엔진을 유동화한 신탁 수익증권에 투자
4.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
 - 혁신금융사업자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여 리스계약이 체결된 엔진을 구매하고, 이를 신탁회사에 신탁
 - 신탁회사는 항공기 엔진(동산)에 대한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수익자)는 유동화된 수익증권에 투자

5. 규제특례 대상 금융관련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0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3조제1항, 제373조

6. 부가조건 : 서비스 개시 전 부가조건 이행여부를 금융위·금감원 보고

① 실물자산 신탁계약에 기반한 수익증권 발행 관련

- 1) 수익증권발행신탁 대상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 설정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모든 권리가 말소된 경우에만 신탁계약을 체결할 것*

* 신탁회사는 상기 내용을 신탁계약서에 명시하고, 신탁계약 체결 전 신탁재산의 실재성 및 제한하는 모든 권리의 소멸 여부를 확인할 것

- 2) 항공기 엔진의 경우 리스계약 체결여부가 수익증권의 가치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일정한(예: 2년 이상 리스계약 체결 등) 조건의 리스계약이 기체결되어 있는 엔진만을 신탁재산으로 할 것

- 3) 수익증권발행신탁 대상 재산에 대한 가치평가방법(Model) 및 동 평가 방법으로 산출한 기준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복수의 외부기관을 선정하고, 수익증권(신용등급 부여 가능시, 신용등급 부여 병행) 발행 전별로 검증·확인받을 것

- 4)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의 시행(24.1.12일)으로 등록 및 비등록 유동화시 발행내역 공개(제33조의2), 유동화증권 위험보유 의무(제33조의3) 등이 신설된 바, 신탁회사(제33조의2) 및 자산보유자(제33조의3)는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

- 5) 실물자산 신탁 수익증권의 투자자 모집한도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내 총 2천억원으로 한정

- 투자자 일인당 연간 투자한도는 일반투자자 1천만원, 소득적격투자자* 3천만원으로 한정

* 연 근로·사업소득 1억 이상 또는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 투자자(온투업법 시행령§27⑥)

- 투자자 일인당 1일 매매회전을*을 100%이하로 제한

* 매매회전율 = (수익증권 거래대금*1/2)/(보유수익증권의 평가액(전일종가) + 예치금)

② 건전한 서비스 영위 및 투자자 보호방안 관련

1) (물적설비) 다음 사항을 서비스 개시 전 금융위에 보고

- * ① (장애대응) 각 모듈 단위 및 사이트 장애에 대한 세부 대응체계 마련
- ② (보안체계) 개인인증 강화, 개인정보 보호 내부통제 체계 등에 대한 보안체계 마련
- ③ (서비스 보안) 모바일 앱, 통신구간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보완
- ④ (데이터 백업) 모든 매매체결 결과 및 호가 정보에 대해 보관
- ⑤ (대외 네트워크) 대외기관 시스템 연계는 전용선 또는 VPN을 이용하며 이중화

2) (인적요건) 유형별 전문인력(실물자산 투자, 내부통제, 조사분석, 리스크관리)을 각각 1명 이상 유지(단, 전산전문인력은 8명 이상 유지 필요)*

* 신탁 대상 자산 선정 및 검증(딜소싱) 관련 전문인력과 별개

3) (이해상충방지체계) 부서간 이해상충방지체계, 정보교류차단장치 마련

4) (업무규정) 업무규정, 상장규정, 시장감시규정 및 공시규정·절차 마련

* (업무규정) 구체적인 투자대상 선정절차, 상품선정위원회 운영기준, 투자대상 검증기준 등을 마련(갤럭시아머니트리와 증권회사 등과의 업무협약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각 참여기관별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책임범위를 정할 것)

* (상장·시장감시) 외부인으로 구성된 독립된 상장 및 시장감시위원회와 시스템을 구축

* (공시규정·절차) **발행공시**(수익증권 내용 등 토큰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신탁사와 공동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여 금감원·금융위에 제출하고 갤럭시아머니트리 홈페이지 및 플랫폼에 공시) 및 **유통공시**(자산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 등 포함, 정기·수시공시)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

5) (분쟁발생 처리결과 통보) 투자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독립적 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고 처리결과를 금융위, 금감원에 통보

6) (투자자 자금관리) 투자자의 투자금은 (주)갤럭시아머니트리의 자산과 분리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

7) (계좌관리기관) 계좌관리기관(증권사 1사)은 전자등록전 플랫폼 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증권과 대금을 동시 결제(관련 규정은 예탁원과 협의)

* 블록체인은 프라이빗블록체인으로 운영하고 토큰은 유통플랫폼 내에서만 유통되게 할 것
8) (투자자 피해방지 방안) 서비스 수요 감소 또는 서비스 중단시 투자자 피해방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

* 항공산업 침체(팬데믹 발생 등)로 엔진 수요가 감소하여 리스료 하향조정 또는 매각 지연 등의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 해킹 피해시 대응방안, 서비스 종료시 구체적인 자금 회수 방안 등을 마련(투자자에게 서비스 중단에 따른 투자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

9) (피해보상 방안) 책임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10) (투자광고 및 영업방식) 기존 유사 혁신금융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투자광고는 내부 준법감시인 및 금융투자협회 심의를 거쳐 허용

* 업체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허용(다른 매체 이용시 홈페이지 주소, 접속 수단, 광고주체, 청약기간만 제공 가능)

- 타사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한 영업 및 금융회사 창구판매, 오프라인 투자설명회·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투자권유는 금지

- 또한, 동 업체가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신탁수익증권과 미리링하여 발행하는 토큰에 대해, 전자증권법 개정 전까지는 '토큰증권 발행(STO)'으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광고·홍보·공시 등을 제한

11) (매매방식 및 사업규모) 다자간상대매매방식으로 한정, 사업규모 제한

12) (자금조달 등 사업계획)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자금조달 계획, 3년 이상의 사업계획 및 주요 투자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서비스 개시 전에 제출할 것

13) 신청인은 항공기 엔진을 先매입한 후, 이를 신탁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사업구조 방식을 희망하는 바, 투자자 보호문제 해소를 위한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여 금융위(금감원)에 보고 후 증권 발행

* [운영방안 포함내용]

① 先매입 후 6개월 이내 신탁계약 체결 등 공모 진행(1차 공모 실패로 인한 재공모시, 공모실패 사례 및 최초 공모가액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 재공모시 투자자 비용전가 우려 완화)

② SPC는 거래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도관체로만 활용

③ 투자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 일체(취득세, 금융비용 등), SPC를 통한 거래구조 등 투자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증권신고서에 모두 기재

④ 공정한 발행가격 산정(선매입~발행가격 결정까지의 기간고려)을 위한 기준 마련

- (재무요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동안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을 200% 이내**로 관리하여 자본건전성을 유지할 것

* SPC 설립 등을 통해 신청사업에 대한 부채비율을 별도로 산출하여 관리할 것

**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재무건전성 요건 및 금융투자업규정상 일반법인 대주주 요건 준용

- (보유한도) 신청인(또는 SPC)이 고가의 엔진을 선매입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차입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엔진 보유 한도를 2건*으로 제한

* 신청인의 사업구조와 유사한 사업자(예: ㈜카사코리아)의 경우에도 해당 부가조건이 추가된 점을 감안

14) 신청인은 상장법인으로서 본건 혁신금융사업자 지정과 관련하여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

- (내부통제) 준법감시인*이 임직원의 신청인 회사 주식 보유현황을 파악하고 매매거래내역 등을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방안 마련

* 신청인은 본건 혁신금융사업자 지정 후 준법감시인을 영입할 예정이나, 준법감시인 영입 전까지 컴플라이언스팀 등 내부감사조직이 동 조건을 이행할 것

- (공시) 신청인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사업 관련하여 거래소 등에 공시할 경우 주요내용에 구체적인 시행시기(예: 지정 후 1년 이후에 사업개시 예정), 사업 중단 가능성, 관련 리스크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할 것

7. 지정일 : 2024. 4. 30.

8. 지정기간 :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2년